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된 안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김건희·최은순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충분히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렇게 또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그 혐의점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집행될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통해서 망신 주기 하려는 그런 의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전례도 없었고 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번 국정감사를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법사위에 채택된 증인이 80여 명 됩니다. 참고인과 합쳐서 1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한 그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어떠실까 이런 고민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 동행명령장으로는 검사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본인이 수령했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을 충분히 국민과 함께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은 또 본인의 판단이고 자유입니다.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출석 의사를 타진했고 또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했고 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사유서도 없고 그리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택 위원님.

○**박규택 위원** 곽규택 위원님 말씀, 왜 저런 말씀 하는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 요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을 했던 횟수가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왜 관행에 없는 일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우리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토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좀 더 들어 보시지요.

○**송석준 위원** 조배숙 위원님 한번 기회 주시지요.

○**이건태 위원** 양당의 입장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지금 국감 진행해야 됩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만…… 토론 종결 동의 누가 했지요? 김용민 위원이 했습니다만 양쪽의 한 분씩만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조배숙 위원** 지금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입니다. 물론 여론이 좋지 않고 또 도이치모터스로 우리가 수사를 했지만 그러나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게 무슨 특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제도상 지금 현재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하고 그리고 또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 그분은 오셔야 할 이유가 없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적으로도, 지난 금요일 날 증인을 많이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다 불출석했어요. 겨우 참고인 1명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참고인 더 출석하게 의결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불출석사유서를 낸 분도 있고 제출 안 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평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얘기하지만 증인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 다 나오느냐 하면 거의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네 번을 출석했습니다, 네 번. 유재은 관리관도 그렇고요. 증인 소환하고 조사하는 것도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가 한번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하면 되지만 이건 네 번이고 앞으로도 또 출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회가 가볍다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권위만 실추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고 피감기관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다 한들 여기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소할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는 단지 그냥 창피 주고 그리고 또 동행명령장 응하지 않았으니까 고발하겠다 그런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한 분 더 토론 듣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건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이건태 위원** 우리 헌법에는 법 앞에 평등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명제를 믿고 국가와 정부가 요구하는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단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 특권, 법 앞에 성역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권과 성역을 넘어서지 못하고는 우리가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헌법적 가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특권과 성역을 받고 법의 집행을 회피하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이러면서 힘이 없는 국민들한테는 세금 내라, 국방의 의무에 나서라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김건희 여사라는 특권,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검찰은 이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리 앞에 무릎을 끓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그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장마저도 이 성역과 특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회 역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행명령장을 반드시 발부해서 그 동행명령장을 국회 법사위의 이름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그 집행을 거부한다면 그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보시고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도록 하는 게 국회 법사위의 역할과 임무입니다. 반드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통상 영부인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전적 의미의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헛갈려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의 부인을 품위 있게 높여 부르는 말,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령(領)과 영부인의 영(衿)은 한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디올백 관련해서 영부인을 기소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여당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인입니다. 물론 민간인이 아니라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다른 중인들에 비해 중요 중인입니다, 최은순 중인도 마찬가지고. 중요 중인이라는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전현희 위원님, 왜 손 안 드셨습니까?

○**전현희 위원** (손을 둡)

○**위원장 정청래** 이미 지나갔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나갔어요.

○**위원장 정청래** 이미 지나갔어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중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지난번에 한 차례 했는데 저에게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행명령장 세부 내용이 뭐냐? 그래서 오늘은 동행명령장 세부 내용을 화면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행명령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는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동행명령장 전달)

동행명령장 집행에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